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25. 02. 05.

주식회사 현대퓨처넷

제정 2018. 03. 27.

개정 2020. 03. 24.

개정 2022. 03. 23.

개정 2025. 02. 0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[3인]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총수의 [3분의 2]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회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,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제 9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9 조의 2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.

1.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
3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그 다음날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.